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9951 취득세등의 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38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627,040원, 취득세 가산세 12,785,100원, 지방교육세 2,324,96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118,65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5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16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